

성희롱·성폭력상담실 안내

연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은 교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01년 문을 열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은 학내 구성원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주요 업무

• 상담 지원

사이버성폭력,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언어적 성희롱 등 학습권과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성차별에 대한 상담지원을 합니다. 상담은 직접 방문, 전화 또는 e-mail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

학내 구성원이 관계된(일방 또는 쌍방) 성폭력 피해사건을 접수하여 '교내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사건을 조사·처리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 법률적 지원을 함께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학내 성폭력 근절과 평등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기교육, 공개특강,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 성평등 문화조성 및 성인지 교육

성인지적 관점 향상을 위한 강연회, 워크샵, 가해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 자료발간

성평등인식 조사,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자료, 지침서 등을 발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희롱·성폭력상담실 홈페이지(www.yonsei.ac.kr/~helpe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및 지원절차

• 상담내용

성희롱, 성차별, 스토킹, 데이트성폭력, 사이버성폭력 등 성폭력 피해 사건 및 일상적인 성고충 상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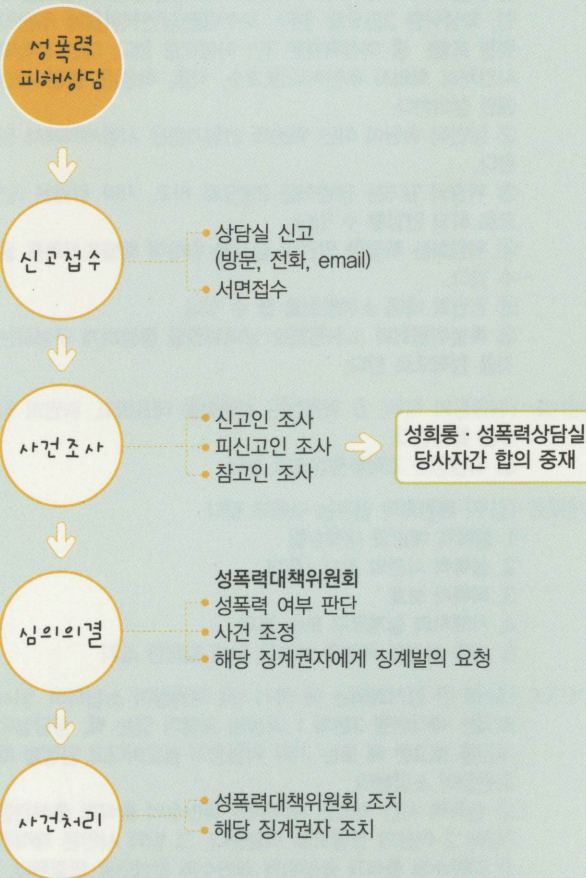
• 전화상담 : 02-2123- 2118

• e-mail 상담 : helper@yonsei.ac.kr

• 방문상담 : 학생회관 2층 205호

• 상담시간 : 월 - 금 09:00 ~ 17:00

개인의 인적사항과 상담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연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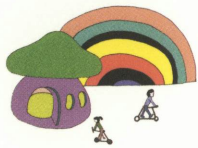
CENTER FOR SEXUAL HARRASSMENT & VIOLENCE PREVENTION
YONSEI UNIVERSITY

Phone 02-2123-2118 Fax 02-2123-2139

E-mail helper@yonsei.ac.kr

Address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학생회관 205호

<http://www.yonsei.ac.kr/~helper>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0. 10. 10. / 1차 개정 2004. 11. 25. / 2차 개정 2007. 12. 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 절차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 학교의 통제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성희롱·성폭력상담실

제6조 [설치] 여학생처 내에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 [구성]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② 상담실에는 전문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6.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교육 및 재발방지
7.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 기록·보존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교학부총장(위원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부원장, 성희롱·성폭력상담실장(이상 5인)으로 하고 추천직위원은 교수위원 3인, 직원위원 3인, 학생위원 3인으로 한다. 교수위원(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폭력사건처리 회의시 추천직위원(교수, 직원, 학생)은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남녀위원을 동등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피해자 보호
4.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5.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① 상담실은 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와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 상담실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상담실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④ 상담실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이전에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4. 가해자의 사죄봉사
③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2차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